

#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사항 안내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 
아래와 같이 교육제도가 변경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기본교육 통합 및 축소

현 행	변 경
- 설계시공기술인 : 35시간 - 건설사업관리기술인 : 70시간 - 품질관리기술인 : 35시간	(업무 구분과 상관없이) 35시간

## 2. 건설사업관리 최초전문교육 훈련시간 증가

현 행	변 경
- 초급·중급 : 35시간 - 고급·특급 : 70시간	- 초급·중급 : 70시간 - 고급·특급 : 105시간

## 3. 계속교육 이수시기 통일

현 행	변 경
- 설계시공기술인 : 매 3년이 지나기 전 - 건설사업관리/품질관리기술인 : 매 3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	업무수행기간 매 3년이 지나기 전

## 4. 교육훈련의 면제 기준 변경

구 분	면제여부		비 고
	현행	변경	
설계시공 최초교육 →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면제	X	○	이수단위시간(35시간) 별로 인정
설계시공 승급교육(고·특급) →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(고·특급) 면제	X	○	이수단위시간(35시간) 별로 인정
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→ 설계시공 최초교육 면제	○	○	-
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(고·특급) → 설계시공 승급교육(고·특급) 면제	○	○	-
품질관리 최초 및 승급교육 → 설계시공 최초 및 승급교육 면제	○	X	-

## 5. 시행일 : 2020년 8월 1일

## 6. 교육안내 : 건설기술교육원 (ekicte.or.kr)

☎ 032-463-4901, 02-565-0162

※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100%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